

●환경부공고제2019-856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개최된 제18차 당사국 총회(19.8.17 ~ 28)에서 결의된 후속조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 개정내용

- 국제적멸종위기종 24종\*(I 급 6종, II 급 18종) 신규 등재
  - \* (I 급종) Lyriocephalus scutatus(도마뱀류)등 4종 및 Perides burchellanus(나비류)등 2종 등 6종 (II 급종) 청상아리 2종, 가오리류 및 해삼류 3종 등 18종
- 기존 국제적멸종위기종 16종\*\* 등급 변경(II → I 8종, I → II 8종)
  - \*\* (II → I) 작은발톱수달, 검은관두루미등 8종 (I → II) 중부바위쥐, 수염솔새류 등 8종 등
- 서식지 변경 1종, 주석 변경 4건 등

3. 의 건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에코바(김성현)

나. 전화번호 : ① 033-345-1101

2. 명칭 : 부식환경에 노출되는 RC구조물 부재의 수지코팅 유연성 및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이 개선된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 신기술은 철근에 피복을 처리하여 산성 및 유해물질로부터 철근을 보호하고 부식 방지를 하므로써,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대하고 건설비용, 생애주기비용, 보수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에폭시 피복철근의 제조 기술이다. 신기술의 주요 구성내용은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여 에폭시 피복 철근의 구조성능(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ASTM 등 국제규격: 85% 이상으로 개선)과 현장 적용성능(굽힘성/ASTM 등 국제규격: 15초 이내 180도 굽힘)을 향상하였으며, 세부 구성 기술은, 일반 철근의 표면에 치상돌기(齒狀突起)나 앵커패턴(ANCHOR PATTERN)의 조면처리를 최적화하고, 열처리 과정의 고주파 처리(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열전도율 제어속도를 0.002초로 순간 처리(기존 순간 처리 열전도율/ 0.2초)하여, 부착력과 현장적용 성능(절단, 충격, 굽힘 등)을 향상한 기술이다

<범위>

신청 신기술은 철근 부식의 발생원인 인자를 제공하는 해양염화물(해양 염소이온 & 콘크리트내 해사(海砂)염소이온& 비래염분), 제설제 등 염화물(동결방지제를 살포하는 한냉지 도로교의 콘크리트 상판과 난간, 콘크리트 타설시 급결제), 탄산화(Carbonation), 지하철 또는 공장밀폐지역, 화학적 침식(Chemical Corrosion), 가정 및 공장에서 발생한 오폐수 처리장 등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장기 내구성이 요구되는 RC구조물에 사용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 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 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